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68 판결 [구상금 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180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68 판결

전문

원고1. A

2. B

피고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 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0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0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 예비적 청구는 전부청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2,0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총칭하여 '피고 C'라 한다)는 2012. 8. 28.

골프장 경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던 익산시 G 소재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2014. 2. 18. 위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2. 18.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사이에 대주 겸 신탁업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주는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으로 정하여 대출금 14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40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A 소유인 피고 C의 주식 10만 주와 원고 B 소유인 피고 C의 주식 20만 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2. 18.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C의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제5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질권자는 담보주식 취득사실을 설정자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입질주식처분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원고들은 위 위임장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행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한다고 기재하였다.

바. 피고 C가 2014. 3. 경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은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채무이행 요청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 중 일부가 2014. 11. 5. 골프장 경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총칭하여 '피고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아.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J은 2015. 3. 31. 피고 D와 사이에 J 소유인 피고 C의 주식 30만 주를 매매대금 60억 원에 매도하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대위변제한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모든 권리를 피고 D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J은 2015. 4.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140억 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질권을 취득하였고, 2015. 4. 14. 다시 피고 D에 위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였다.

차. 피고 D는 2015. 4.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질권의 담보물 중 원고 A 소유 주식 10만 주와 원고 B 소유 주식 15만 주(이하 위 25만 주를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가치를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근질권을 실행함으로써 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은 을 제31호증과 동일),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나타난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

-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2015. 4. 15.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24,917원으로 전체 25만 주의 시가 총액은 31,229,250,000원이다.
-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 140억 원이 모두 변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A은 56억 원, 원고 B는 84억 원의 각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 3) 따라서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 A은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인 10억 원, 피고 B는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인 15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4) 또한 피고 D는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140억 원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A에 대한 정산금은 6,891,700,000원, 원고 B에 대한 정산금은 10,337,550,000원이다.
- 5) 선택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원고들 소유 주식으로부터 추심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6) 따라서 피고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 A은 위 정산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인 20억 원, 원고 B는 위 정산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인 30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관련 주장

- 1) 만약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피고 D의 채무변제충당 통지액인 25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로 소멸한다고 하면,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A은 10억 원, 원고 B는 15억 원의 각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 2) 따라서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A은 위 구상금채권 전부인 10억 원, 피고 B는 위 구상금채권 전부인 15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또한 피고 D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 31,229,250,000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25억 원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A에 대한 정산금은 11,491,700,000원, 원고 B에 대한 정산금은 17,237,550,000원이다.
- 4)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액에서 피고 D가 평가한 가치인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5) 따라서 피고 D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A은 위 정산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20억 원, 원고 B는 위 정산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30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 근질권자의 근질권 실행 방법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유질의 특약을 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한 피고 D의 주식취득가격 등 근질권 실행 방법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적정하지 아니하고 2015. 4. 15.을 기준으로 위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000원 미만에 불과하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한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정산금,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질권자가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 등 담보물을 취득하고 별도의 정산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유질 특약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② 피고 D가 2015. 4. 15.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것이 적절한 가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유질 특약의 해석에 관한 판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상법 제59조, 민법 제339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상사질권 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 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평가금액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과 그에 부가된 입질주식처분위임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제5조 제2항),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원고들은 대리인이 행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하기로 하는(입질주식처분위임장)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 D는 2015. 4. 15. 원고들에게 담보물인 이 사건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은 질권자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 또는 취득하여 그 처분대금 또는 취득금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질권설정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질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시 그 시기, 가격, 수량, 방법 등에 관하여 질권자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들과 질권자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별도의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을 제18호증과 동일), 제20호증, 제24호증, 제2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9 내지 21호증, 제40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6. 10. 23.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12. 11.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F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2013. 3. 22. 기준 가액을 1,821억 7,841만 8,65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위 공매절차는 최저입찰가격이 248억 2,200만 원으로 하락한 2013. 8. 26. 제20차 기일까지도 유찰되었다.

다) 피고 C는 2014. 2. 18.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8억 2,200만 원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3. 경 소유권 변경을 사유로 이 사건 골프장 중 대중제 부분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18.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 중 일부가 전주지방법원에 위 라)항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1. 위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은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판결(2014구합2031, 2014구합2314)을 하였다.

바) 피고 C는 2015. 2.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마)항의 판결에 따른 영업중지 통보를 받는 등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강림티앤지(이하 '강림티앤지'라고만 한다)에게 위 골프장에 있는 식당 건물을 임대하여 강림티앤지로 하여금 골프장 식당 이용 고객들에게 골프장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 C는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3. 2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F로 하여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 F은 2013. 6.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2. 14.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자) 원고 B는 2013. 2. 경 K에게 위 원고 소유의 피고 C 주식 일부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3. 25.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위 원고 소유의 주식 일부를 1주당 6,250원에 매도하였다.

차) 원고들은 2015. 1. 경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는 피고 C의 주식 30만 주를 매매대금은 1주당 15,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피고 D가 피고 C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결국 주식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카) 피고 D는 2015. 1. 경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위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C의 주식 20만 주를 매매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타) J은 2014. 1. 17.부터 2015. 2. 경까지 J 소유의 피고 C 주식 일부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파) 원고들은 2015. 2. 25. L과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는 피고 C의 주식 30만 주를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 원고들은 피고 C의 2015. 3. 11.자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총 90억 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피고 C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15. 4. 27. 전환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 시가감정결과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2015. 4. 15. 기준 시가가 1주당 124,917원이라는 내용인 감정인 M의 시가감정결과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시가감정결과는 기준시점 당시 피고 C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주식가치를 산정하였고 위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중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기준시점의 감정평가금액(토지 1,319억 5,767만 4,000원, 건물 126억 7,810만 3,040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토지, 건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골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인근지역 내 회원제 또는 대중제로 운영되는 다른 골프장 부지의 가격과 비교분석을 통해 그 가액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이 취소됨으로써 2015. 1.경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피고 C가 강림티앤지를 통하여 편법으로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고 해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골프장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F이 이 사건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을 사실상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및 폐지를 거치면서 골프장 영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던 점, ④ 골프장의 이용객수 및 영업이익률 등이 2014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골프장의 수익성은 높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골프장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감정인 N의 시가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 취득가격의 적정성에 관하여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계속해서 유찰되고 결국 피고 C가 위 골프장 부지를 약 248억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골프장 부지의 실제 가격은 위 매매가격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기준시점인 2015. 4. 15.을 전후하여 피고 C의 주식은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된 바 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역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및 전환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발행되었던 점, ③ 피고 C의 주식이 10,000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경영권의 인도 등이 포함되어 가격이 조금 높게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D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취득한 것이 위 주식의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르면 질권설정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고,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2015. 4.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25억 원(= 주식 수 합계 25만 주 × 1주당 가액 1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액인 140억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피고 C는 원고 A에게 구상금 10억 원, 원고 B에게 구상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또한 피고 D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25억 원으로 정하여 취득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위 주식의 가액 합계 25억 원을 피담보채무액 25억 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정산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동아

판사정은영

판사황민웅